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기 외부 보안점검의 대상구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안점검을 내실화하고,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탑승권 취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보호구역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항공기”를 “출입문, 엔진 등 항공기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전단”을 “전단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-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권을 발급한 후 해당 탑승권을 취소한 경우 그 즉시 해당 승객의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항공기 보안조치) ① (생략)	제7조(항공기 보안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항공기의 외부 점검</u>	1. <u>출입문, 엔진 등 항공기</u> ----- -----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) ①·② (생략)	제8조의2(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권을 발급한 후 해당 탑승권을 취소한 경우 그 즉시 해당 승객의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u>
③ <u>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,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한</u>	④ ----- <u>전단 및 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